

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 규정

1991. 2. 1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의 우수학생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의 운영과 이 기금에 의한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장학금의 명칭은 대학원 우수학생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학금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장학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1.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을 구비한 학생으로서 장래의 학문적 공헌이 크게 기대되는 자
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학문적으로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자

제4조(장학금의 심사 및 지급일) 장학금의 심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하고 장학금은 3월과 9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12월 또는 6월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소속 학과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신청서(별지의 소정양식)
2. 학위논문계획서

제6조(심사위원회)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우수학생장학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대학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금액 및 장학생수의 결정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 및 추천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장학금의 지급 및 기간) 장학금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의 취소)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장학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장학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의 재원 및 운영) ① 장학금은 장학기금의 과실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되, 연간 과실액의 7할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기금의 증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본교 재무처장에게 위탁한다.

대학원 우수학생 장학금 규정

부칙(1991. 2. 13. 제정)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뒷면)

1. 학업태도에 대한 의견:
2. 학문적 장래성에 대한 의견:
3.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
4. 기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학 과 장 (인)